

#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감사청구 및 비위혐의 조사결과

## □ 조사개요

- (조사기간) 2017. 2. 8. ~ 2. 17.
- (조사인원) 감사담당관실 2명
- (조사방법) 실지조사
- (조사내용) 장OO 과장의 감사청구 건 및 동 건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동인의 복무위반, 성희롱성 발언 등 비위혐의

## □ 조사결과

### 【아시아문화원 민간보조사업<sup>1)</sup> 사업변경 승인 관련(감사청구)】

- 장OO 과장은 동 사업변경(기간연장) 승인요청 건을 본인의 반대\*에도 불구하고, 담당자(박OO, 김OO)가 전당장 직무대리 전결(결재라인 본인 제외)로 승인 통보하여 위임전결규정 및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
  - \* 비효율적인 사업이고 사업 진척도 없으며 시급한 사안도 아님
- '16.12.30. 전당장 직무대리(방OO)는 장OO 과장에게 동 사업의 기간연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, 이OO 과장 직무대리 및 ◇◇◇과 업무 담당자인 김OO에게 결재절차를 진행토록 지시함
  - 김OO은 전당장 지시를 받고 장 과장에게 전화 및 메시지로 사실 확인했으나 대답이 없자 관련규정\*을 검토한 후 내부결재 및 공문시행
    - \* 전당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제2항 전당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음

1) (사업명) 2016 OOOO 관련 네트워크구축 프로그램 운영, (사업기간) 2016.1.~12. (예산) 450백만 원, (보조사업자) 아시아문화원, (사업내용) ▲저명인사 초청 프로그램 기획.운영, ▲협력 성과물 활용 및 발전체계 구축, ▲국제적 파트너십 이행방안 및 참여확대 프로그램 개발

## 【관련자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장OO 과장의 비위혐의】

- ① (복무규정 위반) 2016.1.~2017.2.까지 출근지각 73건, 근무상황(조퇴) 미처리 후 조기퇴근 19건 등 총 92건의 복무를 위반하였고, 대통령 권한대행 특별지시 및 장관 당부말씀 공문시행이 있었음에도 '16.12.초부터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토요일 촛불집회 참석을 자랑하며 동참을 권유함
- ② (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) 2016.1.13. 저녁식사 및 노래방에서 성희롱 발언 및 성추행, 사무실 및 회식 장소에 성희롱성 부적절한 언행
- ③ (기관장 폄훼 등 부적절한 언행) 전당장 직무대리가 2016.6.경 문화전당 공모에서 탈락하자 기관장을 폄훼하는 부적절한 발언 및 계약직 직원들에게 권한을 벗어난 발언을 함

## □ 조치계획

- 감사청구 건은 전당장의 위임전결규정 위반이나 권한 없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, 담당자는 전당장의 지시를 받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판단되어 종결처리
- 장OO 과장의 복무 위반,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'징계' 요구